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나171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나1719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19가단517119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지

변론종결 2021. 8. 13.

판결선고 2021. 9. 1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19가단517119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B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6. 체결된 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2018. 6. 19. 접수 제228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21. 9. 1.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관재인에 의한 소송절차 수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하여 아직 파산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권혁준, 판사 박미선

별지